제323회 남양주시의회(정례회)
제 1 차 문 화 복 지 위 원 회

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.

문 화 복 지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조 공 선

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○ 본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21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○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보편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(청소년복지 지원법) 근거규정 정비(안 제1조)

○ 정의의 개념 정비(안 제2조)

○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,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보편적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고자 지원대상 규정을 개정함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부서협의

가. 협의기간 : 2026. 7. 28. ~ 8. 5. (10일간)

나. 협의결과

1) 비용추계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(붙임)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규제심사 대상 여부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- 입법예고

가. 예고기간 : 2026. 8. 20. ~ 9. 9. (20일간)

나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다. 관계법령 : 「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」

- 관련부서 : 미래교육과

5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보편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임.

○ 지원대상을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에서 국내체류지가 남양주시인 외국인등록 여성청소년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한 것으로, 지원대상 확대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, 신청·지급 절차와 지원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 임	예산조치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○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○ 「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」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4조(지원대상 및 지원방법)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 첨부 사유

○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여성청소년 외 외국인 및 재외동포 여성청소년을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발생하나,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○ 산출내역 : 지원대상 × 142,000원× 74%(26년 경기도 평균 신청률)

- 지원대상 :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11세 ~ 18세 등록외국인(168명) 및 국내거소(26명) 여성청소년 총 194명(2026. 6.기준)
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연142,000원(매월 11,800원) 지원

○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각각 비용 30%(6,030천원)와 70%(14,069천원)를 분담

□ 조례 개정 주요 내용

○ 상위 법(청소년복지 지원법) 근거규정 정비

- 제1조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제3항

○ 정의의 개념 정비

- 제2조제1호 : “여성청소년”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
- 제2조제3호 : “생리용품 이용권”정의

○ 지원대상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하도록 지원대상 규정을 개정함

-제4조제1항제1~3호 : 주민등록자 외에 외국인 및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지원 대상 확대

4. 작성자

문화교육국 미래교육과장 방희선